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6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등]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6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216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피고, 피항소인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경한

변론 종결2022. 8. 31.

판결 선고2022. 11. 23.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9가단216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이어서 "(설령 원고가 L에게 변제한 합계 287,500,000원을 K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 11. 14. K에게 이자를 합하여 17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K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결론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K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김범준

판사실태광

별지